

◆ 특집 ◆

사슴 수입개방과 대책



방상국

17년 동안 묶어 놓았던 사슴수입이 금년부터 자유화되어 국내 양록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본고는 사슴수입 추진 동향과 수입전망에 대한 진단과 이의 대처방안을 통한 개방 피해 극복 그리고 양록산업화의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았다.

1. 사슴 수입개방

(1) 양록초기의 사슴 수입상황

우리나라는 1930년 북한의 개성, 주을 금강산 등지에서 매화록(만주록) 사육이 양록의 시초이며 남한은 해방후 공진 항씨와 우민영씨가 개성에서 80두를 서울 근교 정릉으로 입식한 것이 한국 양록의 시초이다. 6·25 전란을 거쳐 1954년 살아남은 열한마리(숫8, 암3)의 매화록(만주록)을 정릉으로 재입식 했다고 한다.

그후 1955년부터 1969년까지 대만에서 꽃사슴 224두와 1959년부터 1975년과 83년에 일본에서 428두 그리고 1970년 알라스카에서 순록 123두와 1974년과 1975년에 미국에서 엘크 사슴 280두 카나다에서 150두, 카나다에서 레드디어 168두 뉴질랜드 198두(순록 10두 포함)등 품종별 합계는 꽃사슴 832두, 엘크 430두, 레드디어 266두, 순록 123두 수입총계 1551두이며 이를 사슴은 기후, 풍토, 사육시설, 사료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적응과정에서 순록은 전멸되고

엘크와 레드디어는 운송과정의 스트레스가 겹쳐 30% 이상의 폐사율이 발생했다. 따라서 1975년도 말 현재 정부와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꽃사슴 3,332두, 레드디어 138두, 엘크 207두로 발표 했으며 이를 사슴이 연평균 26%의 증식율로 늘어나서 1991년 말 현재 꽃사슴 120,394두, 레드디어 6,025두, 엘크 924두의 교잡종 3,011두로 추산되고 있다.

(2) 수입추진과 저지활동

외국 사슴의 수입 허가는 1960~69년까지는 농림부가 관장하다가 1970~74년까지 산림청으로 이관했다가 1975년 다시 농림부에서 관장한 이후로 사슴수입을 규제했다. 1956년부터 1975년 사이에 사슴 수입 전매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일부 수입업자는 애농 운동이나 하는듯이 진정서, 건의서, 청원서 따위를 정부와 관계요로에 해마다 관례행사 처럼 들고 다니면서 그럴듯한 구실을 명분으로 내세워 끈질기게 추진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연구회, 친목회, 동우회를 사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진한 농민의 뜻인양 위장하면서 주무당국에 매달리기도 했고 선량한 관련 공무원까지 설득하고 정치인과 정부 고위층에까지 로비활동을 하는 등 필사적으로 수입을 획책했다. 그 와 반대로 국내 양록인은 1975년도

에 협회를 구성하고 양록인의 권익 보호와 양록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사슴 수입 반대를 줄기차게 전개했고 정부 또한 불요불급한 사슴 수입을 불허하는 등 15년 동안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내 양록인을 마음 조이게 해왔다. 1989년 농산물 수입개방 1차 예시 발표에서 사슴 고기(1991년) 수입 개방이 되면서 수입추진업자와 동조자들은 일부 정치인을 앞세워 개방 압력을 가했고 양록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개방저지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입개방을 반대했다.

(3) 수입개방 발표

국내 양록농가의 극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1년 3월 29일 정부는 사슴을 92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국제적인 개방화 시대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금번 예시 품목은 수출가능 품목, 국제교역이 없거나 수입 가능성이 적은 품목등 국내 농업에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을 선정했으며 특히 돼지를 개방하면서 사슴을 제외 시킬 수 없다고 개방동기와 고충을 전해왔다.

이 조치로 17년간 중단됐던 사슴 수입이 자유화 됐다. 그러나 양록 초기는 종록 도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기간 동안 국내 양록은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에서 수입자유화 했으므로 우량종록이 아닌 상업성(저질) 사슴수입추진이 우려된다.

사슴 수입자유화 발표후 전국 7천여 양록인은 닥쳐올 피해를 우려하며 사슴 방매를 서둘렀고 생산자 단체(협회)는 개방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데 반해 사슴수입을 갈망하는 일부 상인과 이때를 은근히 기다리던 인사들은 올 것이 왔다 몇년을 늦추기보다는 매도 미리 맞는편이 낫다고 환호하는 등 양록업계는 희비가 상반되는 가운데 의견 대립이 시작됐다.

(4) 양록업계의 동향

수입개방 시대로 전환된 양록업계는 비상사태로 돌변했다. 양록협회는 3월 30일 회장단 및 제경 임원진급 간담회에서 개방발표 내용과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키로 함에 따라 4월 3일 임원 및 지회장 연석회의는 수입개방 저지 실패의 책임을 지는 뜻으로 회장 이하 임원 일괄사퇴를 결의하고 4월 15일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체제를 정비하기로 결의했다.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는 안정식 전 부회장을 회장으로 대폭 임원개선을 단행하고 사슴 수입개방에 다른 대정부 대책 건의를 채택하는 한편 양록농가의 권익수호와 국내 양록기반 보호차원에서 외국 사슴수입을 계속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협회는 5월 2일 KBS 라디오 방송 (사무국장 출연)과 5월 8일 축산신문사 주관으로 정부 당국자와 학계, 협회가 참여한 수입개방 대책과 양록 발전 방향에 대한 지상토론회 개최등 홍보활동을 강화했

다. 한편 한국양록조합은 개방발표 다음날(3월 30일) 양록조합의 대처 방안을 통해 사슴 수입자유화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입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이들이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대표단을 구성 대상국의 사정을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은 우수품종을 선택하여 실수요자에 공급하도록 하여 상업성 수입방지 계획임을 발표하는 한편 임시총회에서 사슴 수입에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슴의 직수입도 결행키로 결의하고 2~3년간 조합을 통해 수입이 조절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개입요청 등 후속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7월 조합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국내 엘크 사슴을 대부분 잡종으로 절하하는 표현과 수입사슴 구매희망 신청서를 발송했고, 10월중순 통신문을 통해 조합은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상들의 폭리와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계획적 수입 억제를 위해 직접 수입에 개입하기로 한 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으로 수입 통로를 단일화해서 계획적인 수입정책으로 사슴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주장하고 외국의 레드디어, 엘크 현지 가격과 수입공급 예상가격을 제시하고 수입신청을 안내한 바 있으며 12월 12일 사슴 수입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록수입을 추진했다.

또한 월간가슴 발행인 이강홍씨는 10월초순부터 뉴질랜드산 레드디어 3,000두 수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

의 지사장을 통해 수입사슴 분양 신청과 동시 함께 계약금을 받는등 수입추진 선두주자로 나섰는가 하면 축산 기업인 매일유업은 납유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 사슴분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92년 봄 사슴수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양록업계는 4분 5열되어 서로 중상모략하면서도 양록농가 보호와 양록발전이란 거짓 명분을 잊지 않았다.

사슴수입저지 주장과 사슴수입추진 불가피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사슴 수입 추진은 활발해지고 있어 양록협회는 양록농가와 양록관련 단체가 단결하여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91년 10월 1일 임원회의에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개방대책회의 구성을 결의하고 오후 3시 관련 단체장과 본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개방대책 협의회 구성을 시도했으나 월간사슴은 사슴수입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으며, 양록조합은 수입창구를 조합으로 주장하는등 각 단체의 의견분열로 협의체 구성이 무산되었다. 협의회의 구성이 무산되자 조합과 월간사슴은 사슴수입 분양신청에 착수하는등 수입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입업자 또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협회는 12월 19일 수입개방 대책 수립을 위해 뉴질랜드 농대교수를 초청 수입 대상국의 양록실태, 광종형 교수의 수입추진동향, 이근상 축산시험장의 개방대책에 대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사슴수

입의 문제점과 개방후의 대책을 제시했다.

2. 수입추진동향과 협회의 저지대책

(1) 수입사슴의 위생조건 강화

협회는 저질 사슴수입 억제를 위해 10월 15일 수입사슴의 검역조건 강화를 통한 국내 양육보호를 하도록 관련 법령 보완을 건의하는 한편 수차의 실무차원 협의를 통해 수출국에서의 위생조건과 국내 검역은 정부 검역장 시설은 1회에 비행기 한대분 검역 능력으로 축소하고 철저한 검역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10월 28일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 위생조건을 마련하고 사본을 본회로 보내왔는데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대상국은 미국, 카나다, 일본 대만,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애란, 스웨덴, 덴마크, 국내에서 출산한 생후 6개월 이상의 사슴.
2. 수출국(이상10개국)내에서 구제역, 우폐역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이내 지역에서 5년간 Scrapie, 요내병, 결핵병, 부루세라병 및 BSE가 임상적, 미생물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사슴군 또는 농장에서 출산 및 사육 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 사슴은 수출국의 수출검사 개시전 수출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이내 지역에서 2년간 부루텅, 광경병, 수포성구내염, 출혈성 패혈증, 아나프라즈마, 전염성 농포

성 피부염, 웹토스파이라병(*L. canicola*, *L. pomonona*, *L. icterohae-morrhagiae*, *L. hardjo*), 캄피로박테 병(*C. fetus*), 리스테리아증, 도약병, 록키산열, Q열, 야토병, 타일레리아, 바베시아, 악성카탈열, 탄저, 라임병, 유행성 출혈열, 트리파노소마, 에페리트조온병, 앙두, 톡소프라스마, 럼프스킨병, Screw-worm 및 전염성 비기관염이 임상적, 미생물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사슴군 또는 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5. 수출 사슴은 구제역, 우역, 우폐역, 부루세라, 수포성 구내염, 럼프스킨 병, 부루텅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수출 사슴은 한국으로 선적직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45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검역 개시후는 당해 수출 사슴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7. 수출 사슴은 동조건 제6항의 격리 검사 기간중(결핵, 요네병에 대해서는 한국도착전 45~60일)에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와 개체별로 임상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사슴이어야 한다.
8. 수출 사슴의 검역시설과 수출 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장, 차량, 항공기는 사용전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

다.(9. 10. 11 누락)

12. 수출국 정부기관은 수출국내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발생월보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에 동조건중 제2항의 질병 또는 그 의사 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에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기관 앞으로 필요 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수출국 정부기관(수의관)은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가. 상기 1, 2, 3, 4, 5, 6, 7, 8항에서 명시한 사항
 - 나. 수출 검사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시간
 - 다. 수출 동물의 생산 및 사양농장의 명칭, 소재지
 - 라. 별표에 명시된 각 질병의 검사 방법, 검사일자 및 결과
 - 마. 예방주사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제조회사, 제조 lot번호 및 접종년월일
 - 바. 기생충 구제 등 유효약제 처치 시는 종류, 투여량, 투여방법 및 처치년월일
 - 사. 선적일, 선적지, 선(기)명
 - 아.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 성명
 - 자.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2) 사슴 수입추진동향

수입개시 2개월전인 91년 10월부터 수입업자들의 수입대상국 출입이

활발해지면서 동물검역소에 수입 상담이 쇄도해졌다. 91년 12월말 모 일간지는 매일유업등 10대기업이 참여하는 10만두 수입 예상이라는 1면 톱보도로 관계 정책 당국(기획원, 재무, 농수산부)을 당황케하고 업계를 경악케했다.

이어 92년 1월 25일 국립 동물검역소는 1월 22일 현재 마감한 수입 신청 상황은 신청자 27명이 34,544를 신청했다는 발표로 베일에 쌓인 수입상들의 명단이 밝혀지면서 업계는 술렁됐다.

이들의 신청상황을 국별로 보면 미국 634두(엘크), 카나다 540두(엘크), 뉴질랜드 13,820두(레드, 와피티), 호주 19,550(레드) 품종별로는 Reddeer 28,100두 Elk 1,174두 WAPTTY 5,270두 이다.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월 25일 한국일보는 “무분별한 수입억제 하라! 무역적자 막으려면 도리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보신용 약제인 사슴 수입신청이 34,544두나 된다는데 아래가지고서도 무역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이하게 여겨질 지경이다. 정부는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외래품 수입에 이제 결연한 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형편이야 어떻게 되건 잊속만 따지는 장사꾼들에게 더이상 무분별한 수입이 폭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고 뒤따라 정부당국은 국내 산업보호 차원의 대책 찾기에 몰두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1/22 사슴 수입검역 신청상황 및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의거 금년부터 사슴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사슴 수입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검역대책을 수립 시행하므로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국내 양육농가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사슴 수입 검역시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다.

○ 사슴 수입 검역 계류장 설치 추진

91. 11. 1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거 사슴 수입 위생조건을 제정 수출대상국에 통보하였으며 해외 가축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 수입 동물 등 사전 지정 검역제도 확대 실시

사슴 수입자는 수입 30일전에 국립동물 검역소장에서 수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동물검역소장은 동물검역소의 검역시설등을 감안 시기, 장소, 물량등을 사전에 지정, 조정토록 하므로 검역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슴 수입은 사슴검역 계루시설 능력 범위안에서 수입자간 산용순위를 서로 협의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므로써 실제 수입량은 5,000~10,000두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3) 사슴 수입 전망

수입신청 상황을 보면 사슴수입을 추진해온 매일유업과 양육조합 그리고 몇몇 업자는 빠지고 예상외의 인

사들이 20여명으로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중 양육관련 인사는 강성구·이강홍·길정식·김팔운·정상원·조재호 등이고 축산단체는 제주축협이 참여했으며 그외는 단순 상업성으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 인사중 몇 사람만 수입 물량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물량확보 없이 수입 신청서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중에는 최근까지 물량확보와 수입준비를 위해 외국나들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부분 물량확보도 준비도 없이 대량 신청해서 양육인들을 불안케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청상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접수 발표회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케하는 당국의 처사에 대해 불평이 일고 있다.

한편 수입 신청자들은 2월 14일 수입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회장 강성구·부회장 전병소, 길정식·총무 백우현 씨를 선출한 다음 국내 검역시설과 관련하여 신청량의 10분의 1로 대폭 감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검역당국은 3월 18일 수입 순위 추첨을 실시했는데 신청자 27명중 25명이 참가해서 검역당국이 제시한 검역 회수 3회(3개월)에 대한 추첨결과 1순위 문명길(5월 28일), 2순위 전병소(6월 22일), 3순위 제주축협(7월 17일)이 당첨됐으나 수입 물량확보와 수출국의 우리나라 위생조건을 이행해야 예정대로 수입이 실현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슴을 수출할 수 있

는 대상국 중 미국과 카나다는 엘크 사슴, 뉴질랜드와 호주는 레드디어로 구분할 수 있으나, 카나다는 우량 엘크 사슴 보유국이지만 수출을 하지 않은 형편이고 미국 또한 엘크사슴 보유두수가 예상 외로 적어서 수출 물량이 기백두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 호주는 레드디어 사육두수가 많아서 수출가능두수는 수만두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위

생조건에 합당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한 위생조건 이행 여부가 결림돌이 되고 있어 당장 수입실현은 불투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양록국이며, 우리나라에 4만 7천 키로 녹용 수출을 하고 있어 생사슴 수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금년도 사슴 수입은 극히 불투명하다.

92 사슴 수입 계획서 신청내역

192. 1. 22 현재

신청인	품종	두수	수출선	비고
개성사슴농장조재호	레드디어	3,150	호주	
강성구	엘크	184	미국	
차인길	레드디어	900	뉴질랜드	
송한영	레드디어	900	뉴질랜드	
제주축협	레드디어	900	뉴질랜드	
박경숙	엘크	340	카나다	
최종택	레드디어	800	뉴질랜드	
성무무역(주). 박강용	레드디어	900	호주	
심만성	레드디어	700	호주	
권태봉	레드디어	800	호주	
동물농장(주). 이강홍	레드디어	3,000	호주	
오정현	레드디어	1,750	호주	
동아농산김성조	레드디어	1,800	호주	
MILLBANK KOREA 정구상	레드디어	1,800	뉴질랜드	
백우현	레드디어	1,600	뉴질랜드	
삼원교역(주). 최용성	레드디어	800	호주	
최진백	레드디어	700	뉴질랜드	
유근홍	레드디어	750	뉴질랜드	
김팔운	레드디어	2,000	호주	
제주녹원. 김정수	레드디어	1,800	호주	
일호사슴. 길정식	레드디어	850	호주	
김준선	레드디어	2,000	호주	

신 청 인	품 종	두 수	수 출 선	비 고
성 진 회	와 피 티	470	뉴 질 랜드	
신 정 회	와 피 티	500	뉴 질 랜드	
전 병 소	와 피 티, 엘크	(2,400). (250)	뉴질랜드, 미국	
정 상 원	와 피 티	1,900	뉴 질 랜드	
문 명 길	엘 크	400	캐나다, 미국	
27명		34,544		

수입순위 당첨 내역

검 역 시 기	수 입 자	직 업	품 종 및 수 량	수 입 선	합 의 사 항	수 입 가 능 두 수
5.28	문명길	세명종합개발	엘 크 400	미국,캐나다	엘크신청인합동	자록400두이내
6.22	전병소	세종무역대표	엘크,와피티 2,650	뉴 질 랜드	물량확보공동	자록950두이내
7.17	김병선	제 주 축 협	레드디어 900	뉴 질 랜드	단 독	자록900두이내

3. 협회의 개방 대응책

(1) 개방 대응정책 지원 건의

협회는 91년 4월 15일 개방대책과 10월 17일 수입 사슴검역 강화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개방대책 수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1992년 1월 22일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양록산업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개방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방대책을 건의했다.

정부 당국은 양록농가 보호를 위하여 무분별한 사슴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로 수입 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검역은 정부 검역시설로 국한시켰으며 수용시설을 천두이내로 제한 설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양록농가의 피해가 심할 경우 조정관세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영세 사육농가의 전업전환을 위한 축산진흥 자금 지원도 고려한다고 회신했다.

(2) 상업성 사슴 수입저지

협회는 민법32조에 의거 양록농가로 조

직한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양록농가의 권리보호와 한국 양록발전이 목적 사업이다. 따라서 개방으로 위협받는 양록농가 보호와 한국 양록의 지속적인 발전추구가 당면과제이므로 협회는 2월 10일 수입개방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상업성 사슴 수입 저지를 위한 전국 각지역의 집회를 통해 저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수입 예상 품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국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상업성 수입업자의 수입포기 및 수입사슴 분양 포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월~3월사이 지방 결의대회를 끝내고 신문, TV, 라디오등 언론을 통한 홍보는 수입추진 상황에 따라 적기에 중점 홍보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3) 우량 사슴 발굴과 종록 개발

흔히들 국내 사슴은 수입된지 오래이고 혈통개선 없이 근친 혼혈로 인해 퇴화됐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슴이 품종별로 혈통보전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슴의 개체의 발달이나 녹용 생산량이 외국 우수 품종보다 더 우수한 사슴이 많이 있는데도 외산 승배풍조에 젖어 국산을 멸시하는 그릇된 풍조가 외산 수입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현재 수입 하려는 레드디어는 수출국 사슴 가운데 종록도 아니고 우수 사슴도 아닌 일반(육용) 사슴의 자록이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종록이라고 믿고 분양신청을 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본 회는 이와같은 사실을 홍보해서 피해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에게 외국 사슴 순화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의 우수 사슴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슴으로 지정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바로 눈앞에 우수종록을 두고 남의 일반 사슴을 종록으로 수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우수 사슴이나 종록은 수출국 현지 시세가 우리나라 일반 사슴시세보다 더 비싸서 상업성(이익)이 없어 수입업자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슴 가운데 품종별로 우수 사슴을 발굴하여 종록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공쟁거래가 정착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 할 것이다.

4. 개방이후의 대처

(1) 양록의 산업화

우리나라 양록은 희귀야생동물인 사슴을 가축화 단계를 거쳐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하겠다. 양록 초기인 1960년대에는 외부에서 도입한 꽃사슴

수백두를 일부 부유층이 애완동물 사육 형태로 출발해서 1970년대의 중, 대형 사슴 수백두를 추가로 도입하여 녹용 생산 위주의 양록으로 발전했으나 사치성 동물사육이라는 정책적 냉대와 한의약업계의 녹용 수매 기피를 비롯하여 약사법 적용과 불공정 과세 그리고 사슴사육장 시설의 규제등으로 인해 조사료 이용이 용이하고 공해가 적은 산지 양록을 못하고 부득이 도시근교 사육으로 정착 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부터 사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아 전국 각 지역 농촌으로 사육이 확대되면서 부유층 사육에서 농민사육으로 정착되고 있다. 1991도말 국내양록현황은 꽃사슴 12만여두, 레드디어 6천여두, 엘크 9천여두, 교잡종 3천여두등 13만 8천두를 7천여 농가에서 기르고 있으며 약 2만키로의 건녹용 생산으로 내수의 20%를 자급하고 있어 양록 규모면에서는 뉴질랜드, 중국, 소련에 이어 4위로 성장했으나 사육기술과 녹용의 품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도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사슴 수입이 자유화 되어 국내 사슴은 더 높은율의 중식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가축군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한우, 육우, 돼지, 닭에 이어 우리나라 주축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현실을 축정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며, 양록산업화를 뒷받침할 관련 정책수립을 통해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제도적인 시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산업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제 경쟁력 제고

91년 사슴고기를 개방한 데 이어 금년

부터 생사슴수입을 자유화 했을 뿐만 아니라 녹용은 홍수같이 수입되고 녹혈마저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슴과 생산물 모두를 개방한 것으로서 완전 자유경쟁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즉 한국양록은 완전 국제경쟁을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란 대동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흥미가 있는데 우리 양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첫째 국가 시책상의 불평등, 둘째 생산가의 격차인데 이와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국제 경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째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양록정책을 비교하면 선진화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국내 양록발전을 뒷받침할 정책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사슴뿔은 약에서 축산물로 바로 고쳐 생산자의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하고 사슴과 생산물의 수매 유통은 생산자 단체에서 관장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부업 규모 사육 범위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슴뿔에 적용하는 특별소비세는 수입 녹용에 국한하고 사슴 사육시설은 임간사육을 허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육 기술 개발과 품종개량 연구, 녹용을 비롯한 부산물의 가공이용 시설등을 설치해 유통구조를 현대화해서 공정거래를 통한 생산과 수급조절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녹용은 성분과 효능을 현대 의학적 연구를 통해 세계 모든 인류가 애용하도록 하기 위해 동의보감에 의한 보약 제에서 탈피 현대인이 부담없이 간편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생약화해서 대중화 추세를 뒷받침하도록 국공립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생산가격의

차이다.

우리나라의 사육규모는 농촌이 평균 10두 이내이고, 도시근교 평균 25두 내외로 추정하며 사육장 면적은 50평~1,000평 정도의 집약사육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농장당 평균 사육두수 280두를 넓은 방목장에서 사료자급을 하고 있어 비교가 안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녹용과 녹혈 생산 위주의 양록인데 반해 뉴질랜드는 녹육과 녹용 뿐 아니라 기타 부산물 생산으로 소, 돼지, 양 보다 3배 이상의 고소득 축종으로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40년간의 양록 결과가 13만두의 사슴에서 2만키로의 녹용자급을 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20년 미만의 양록 역사지만 110만두의 사슴에서 4만 7천키로의 녹용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4,700톤의 녹육을 세계각국으로 수출하는 양록 대국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개방시대의 경쟁 대상국과의 실상이다. 이와같이 열악한 환경과 빈약한 정책사이에서 싸워야 하는 국내 양록농가의 경쟁력 배양방법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및 상품성 제고로 요약한다. 즉 합리적 경영인데 1차적으로 소수 부업 의탁 사육에서 가사노동력 중심의 전업규모로 경영형태를 개선해서 노동력 해결과 인건비 지출을 경감하고 다음 단계로는 조사료 생산공급이 용이한 임간 또는 산록 구릉지대로 목장을 옮겨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녹혈채취를 억제해서 녹용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개선을 하는데는 입지선정과 품종선택이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점차적으로 사이비 양록인은 손을 떼고 농민

전업 양록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현 양록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3) 유통구조의 개선

사슴사육에 못지않게 사슴과 그 생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사슴의 방문구매와 녹용의 현장판매 원시적 유통구조에서 사슴의 경매제도와 녹용의 계통판매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우량 녹용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우량 사슴 발굴과 현 사슴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사슴수의 85%인 꽃사슴은 중국산 매화록이나 북한산 꽃사슴에 비해 녹용 생산량이 1:2.5로 낮아서 개량이 시급하지만 중국은 수출을 염금할 뿐 아니라 부제역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북한은 당장은 안돼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으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녹용 생산량이 많고 경제성이 높은 엘크 사슴은 국내산이 우수하기 때문에 혈통보전과 녹용 품질이 우수한 종록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레드디어는 국가간의 유통 과정에서 개량되어 순종확보가 어려우므로 저질(육용) 수입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업성(육용) 사슴이 아닌 우수 종록이라 하더라도 수입 사슴을 실수요자에 직접 분양처 말고 종록장에서 순화 적응시킨 다음 2세 종록 분양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사슴의 유통구조는 아직도 원시적이다. 원매자나 상인이 농장을 방문해서

사고파는 과장에서 많은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와같이 불편한 유통구조를 시장경매제도 또는 상설 분양장 제도로 현대화해서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록의 주산물인 녹용은 수입품이 80%를 차지하지만 불과 20%의 국산녹용 유통이 제대로 안돼 상품화하지 못하고 썩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세월동안 수입녹용만 취급한 국내 한의약 업계에서 국산 수매를 기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꽃사슴 농장은 어쩔 수 없이 실수요자에 농장직 소매하는 까닭에 수요자 확보를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

이런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층이 없는 농촌에서는 농장주의 판매 능력범위의 사육규모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료 이용율이 높은 농촌사육을 기피하거나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생산물의 판매가 용이치 못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 따라서 양록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은 생산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팔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자 단체와 정부는 현대식 가공처리 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생 녹용과 녹혈을 수매해서 위생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한방 보약제로 활용하는 한편 현대인의 기호에 맡게 생약제·드링크 제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양록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협회 사무국장